

#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

## 1 기본 현황

### 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								
사업위치											
총사업비	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: none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right;">총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국비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사비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보조율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구비)</td> </tr> <tr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,220,008천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0,220,008천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0 %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	총	(국비)	(사비)	(보조율)	(구비)		10,220,008천원	10,220,008천원	0 %	
총	(국비)	(사비)	(보조율)	(구비)							
	10,220,008천원	10,220,008천원	0 %								
사업내용	○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자치구 교부										
사업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직접수행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자치단체 보조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이전 <input type="checkbox"/> 출연출자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위탁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										
사업시행주체	서울특별시										

### 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
신규	계속	투자심사	학술용역	기술심사	지역보조심의	정보화심사	공유재산	안전예산	출자·출연
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
경상	투자								
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								

### 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기후환경본부	환경정책과	정환중 2133-3510	김연홍 2133-3528	안소영 2133-3534

## 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4년 예산액	2015예산액 (A)	2016예산(B)	증감 (B-A)	(B-A)*100/A
					(x-)
계	(x-) 24,853,988	(x-) 18,152,824	(x-) 10,220,008	(x-) △7,932,816	(x-) △43
징수교부금	(x-) 24,853,988	(x-) 18,152,824	(x-) 10,220,008	(x-) △7,932,816	(x-) △43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과목구분	세부 산출내역
징수교부금	○ [징수교부금(3년 평균 자동차분 부담금 징수액×10%)+전년도 추가징수 교부금]×90% ×90%(10,050,267천+1,305,297천원) = 10,220,008천원

**3** 사업 설명

□ 사업목적

-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? 징수하고 징수금액의 일부를 징수비용으로 교부

□ 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
  -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4항, 동법 시행령 제11조
- 기타 근거(방침, 지침 등)
  - 환경개선부담금 부과· 징수업무처리규정 제34조
  -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및 추가 징수비용 등에 관한 규정

□ 사업내용

- 부과대상 : 유통·소비 목적의 연면적 160㎡ 이상 시설물(공장, 주택 제외) 및 경유사용 자동차
- 부과횟수 : 연 2회(3월, 9월)
- 부과권자 : 환경부장관(자치구 위임사무)
- 징수금 배분 : 환경부에서는 각 시·도로 연 징수액의 10%를 교부, 교부받은 금액 중 10%는 시수입, 90%는 자치구에 재교부
- 사용용도 : 자치구 교부금은 각 자치구 부과징수 소요경비 충당, 관할지역 환경개선, 행정소송 비용, 업무담당자 포상금 등에 사용

추진경위

- 1991.12.31. :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정·? 공포(법률 제4493호)
- 1993.2.11. :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최초 부과
- 1994.3. :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최초 부과

중점추진사항(사업추진의 필요성)

사업추진절차

- 집행절차
  - 각 구청 징수액 전액 국고로 귀속 → 환경부에서 징수액의 10%를 시로 교부 → 교부액 중 10%는 시 자체수입으로, 90%는 각 자치구로 재교부

2016년도 추진일정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10,220,008	
환경개선부담금 징수금	2016.01		환경부에서 징수액의 10%를 시로 교부
환경개선부담금 교부금	2016.01~2016.12	10,220,008	교부받은 금액 중 10%는 시 자체수입, 90%는 자치구 교부

**4** 사업효과

최근 3년 추진실적

2013년도	○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교부 : 18,272,144천원
2014년도	○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교부 : 24,853,988천원
2015년도	○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교부금 교부 : 18,152,824천원

향후 기대효과

- 징수실적 우수자치구에 추가징수 교부금을 교부하여 징수의지 및 징수율 제고

**5** 최근 3년 결산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도	당초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2	(x-) 17,077,653	(x-) 0	(x-) 0	(x-) 17,077,653	(x-) 17,077,215	(x-) 0	(x-) 438
2013	(x-) 18,272,144	(x-) 0	(x-) 0	(x-) 18,272,144	(x-) 18,272,144	(x-) 0	(x-) 0
2014	(x-) 24,853,988	(x-) 0	(x-) 0	(x-) 24,853,988	(x-) 24,853,759	(x-) 0	(x-) 229